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179호 2017. 12. 19(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17 - 138호) 2

◀ 고 시 ▶

-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7 - 168호) 15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7 - 138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임신공무원 보호,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등 직원 사기진작과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위해 다음연도 연가일수 미리사용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 (안 제8조제4항 신설)
- 임산부 모성보호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연가 미리사용** 규정에 대해 단서규정 삭제 (안 제19조제6항)
-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시 의무적 승인 강화**(안 제23조제1항 개정).
- 3일장 장례문화 및 부모세대 고령화에 따른 장례절차 추진 등 실소요 일수를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개정 (안 제23조제1항)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3일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3일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별표 3)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 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제13항 신설).
-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4항 신설).
-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의 포상휴가(3일 이내)** (안 제23조제15항 신설).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 270-2063, FAX 270-207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행하기위하여”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존중하여야”를 “유지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시 를”을 “지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명하여야”를 “결과를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감독권 을”을 “감독권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제5항 중 “연가보상 비”를 “연가보상비”로 한다.

제19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 법 조문 확인요망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 중 “출석수업기 간에”를 “출석수업 기간에”로 한다.

제23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⑮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u>수행하기위하여</u>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 -- <u>수행하기 위하여</u> ----- -----.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u>존중하여야</u> 한다. ② (생략)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 ----- ----- 유지 <u>하여야</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략)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u>지시</u>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u>복명하여야</u> 한다. 〈신설〉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지시</u>를 ----- ③ ----- ----- ----- <u>결과를 보고하여야</u> ----.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u>제한할 수 있다.</u>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
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 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
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다음연 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공가) (생 략)

1. ~ 4. (생 략)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경우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연가
보상비-----

⑥ -----

〈후단 삭제〉

제22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 10.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
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
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 ⑫ (생략)

〈신설〉

〈신설〉

제31조-----

7.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출석수업 기간에 -----

⑥ ~ ⑫ (현행과 같음)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
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
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
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
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신 설〉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⑮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행

개정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7 - 168호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기계면 내단리 산27-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청사)의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포 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①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34	8	국지 도로	170	내단리 1088-1	내단리 1016-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2	35	8	국지 도로	181	내단리 758-1	내단리 742-5	일반 도로	-	-	-

②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2-34호선	· 노선신설 (B=8m, L=170m)	· 공공청사(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진입도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소로 2-35호선	· 노선신설 (B=8m, L=181m)	· 공공청사(동해안119 특수구조단) 진입도로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동해안119 특수구조단	공공청사	기계면 내단리 산27-1번지 일원	-	증)88,448	88,448		

②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 공공청사 신설 A=88,448㎡	· 경상북도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건립 조성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도로·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 실음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4)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